

□ 교육 개요

Q1.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수행을 위한 법적 근거는?

- ☞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, 동법 시행령 제5조의2
 - 상시근로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서 사업주는 매년 1회, 1시간 이상 사업주와 전체 직원에 대하여 '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'을 실시하여야 한다 (1인 사업주 포함)
 - 전체 직원이라 함은 정규직, 비정규직 등 모든 근로자를 말한다.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
 - 「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파견근로자가 이루어지는 사업장에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사용자사업주가 실시한다

Q2. 교육 시행 시기는?

- ☞ 연중 사업주가 교육을 실시하기에 적절한 때에 1회, 1시간 이상 실시한다

Q3. 교육 대상은?

- ☞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(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도 해당되며, 파견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용자사업주가 교육 주체임)
 - 출장, 휴가 또는 업무 때문에 교육에 불참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

Q4. 교육 횟수는?

- ☞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회 이상 실시
 - * 2018년 1월 1일부터 5월 28일까지 종전의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한 사업주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봄(시행령(안) 부칙 제3조)

Q5. 교육 시간은?

- ☞ 최소 1시간 이상

Q6. 교육 내용은?

- ☞ 1.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
- 2.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,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
- 3.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
- 4. 그 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

Q7. 교육 실시하는 누가?

- ☞ 1. 사업주 또는 내부 직원이 직접 실시
- 2. 위탁 기관에 교육 위탁
- 3. 강사를 초빙하여 실시

Q8-1. 교육 방법은?

- ☞ 1. 대면교육(집합)으로 실시
- 2. 인터넷을 통한 교육의 경우 구성 단위별 진도 체크, 교육 내용에 대한 테스트(확인), 궁금증에 대한 질의·응답 등 피교육자에게 교육 내용이 제대로 전달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구비
- 3. 체험교육을 행할 수 있으나, 다른 교육 방법과 병행하여 필수 내용에 대한 교육이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,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으로 지정 받은 체험교육장*을 이용할 수 있다.

*체험교육장에서는 필수 교육 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지정 받은 강사에 의한 교육이 별도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.

Q8-2. 집합 교육이란?

- ☞ 사업주·내부직원·외부강사를 활용하여 직원연수, 조회, 회의 등을 통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 단, 문서 및 교재만 회람하는 경우와 같이 수강자가 교육내용을 숙지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는 방법으로 교육한 경우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.
- ☞ 사업주 및 인사담당자가 직접 교육할 때 필요한 표준 교육 구성안과 교안 자료(PPT, 동영상 보조자료 등)는 5월 29일부터공단 홈페이지에서 제공

Q8-3. 원격 교육이란?

- ☞ 인터넷을 통한 교육을 말한다. 인터넷 등 통신을 이용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구성 단위별 진도 체크, 교육 내용에 대한 확인, 궁금증에 대한 질의·응답 등 수강자에게 교육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구비되어 있어야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된다.
- ☞ 단순히 교육 자료를 배포·게시하거나 이메일을 보내는 등 수강자에게 교육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교육을 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.
- ☞ 사내 온라인 교육 시스템 환경을 갖추고 있는 사업체에는 공단에서 포팅용 LMS*를 제공받아 이용할 수 있다.

* 진도, 출석, 성적을 관리하는 온라인 학사관리운영시스템

Q8-4. 체험 교육이란?

- ☞ 사업주는 체험교육을 교육 과정의 일부(시행령 제5조2항 1호 장애 유형의 이해)로 진행할 수 있으나, 필수 내용에 대한 교육이 누락

되지 않도록 다른 교육과 병행 실시하여야 하며,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으로 지정 받은 체험교육장*을 이용할 수 있다.

* 체험교육장에서는 필수 교육 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지정 받은 강사에 의한 교육이 별도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.

Q8-5. 간이 교육이란?

- ☞ 법 제28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사업주(50인 미만 사업주)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급한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- ☞ 간이교육 자료는 5월 29일 이후 공단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기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, 소속기관에서 제공 받을 수 있다.

Q9. 출장·휴가인 직원은?

- ☞ 출장, 휴가 또는 업무 때문에 교육에 불참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
Q10. 상급직원 교육은?

- ☞ 사업주는 물론 이사, 임원 등 상급자도 교육을 받아야 한다. 이사, 전무 등이 교육에 계속 불참할 경우, 회사는 교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.

Q11. 원격훈련기관의 1차시(25분)는 1시간으로 인정되는지?

- ☞ 러닝타임 1시간 이상이어야 교육으로 인정된다. 1차시가 25분이라면 최소 3차시까지 교육을 들어야 인정된다.